

임원보수규정

개정 2014.01.28 (시행 2014.01.0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사의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장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이하 “사장경영계약”이라 한다)에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장경영계약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보수의 종류) 보수의 종류는 연봉 및 퇴직급여로 한다.

제4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으로서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연봉을 말한다.
3. “성과급”이라 함은 임원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연봉을 말한다.

제2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5조 (기본연봉) ① 임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장의 기본연봉은 사장경영계약으로 정하고, 상임감사위원의 기본연봉은 사장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② 기본연봉은 12등분하여 연봉규정에서 정한 연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임원이 취임하거나 임기중 해임, 임기만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당 월의 기본연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 (성과급) ① 사장의 성과급은 사장경영계약으로 정한다.

② 상임감사위원의 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 결과에 의한다.

③ 사장과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100% 범위내에서 사장과 각 임원간에 체결하는 경영계약에 의거 산정한다.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성과급의 지급을 제한한다.

1.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직무소홀, 경영실적 저조 등 「공공기관운영법」상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된 경우 해임일이 속하는 연도의 성과급 전액과 그 직전년도 성과급의 반액
2. 「임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에 의한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제재금액

제7조 (성과급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원의 성과급(퇴임한 임원의 퇴임년도 성과급을 포함한다)은 경영계약 이행실적평가 또는 직무수행 실적평가 완료 이후 3월 이내의 연봉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임원이 연도중에 취임 또는 퇴임하는 경우에 취임일 또는 퇴임일이 속하는 연도의 성과급은 그 해의 재임기간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할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8조 (휴직자의 연봉) 휴직중인 임원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 (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① 임원간의 직위변경으로 연봉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위변경일이 속하는 월의 연봉은 변동 전후의 연봉에 의하여 일할 계산한다.

② 휴직자가 복직한 경우의 당월 연봉은 그 복직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제3장 퇴직급여

제9조 (퇴직급여) ① 퇴직급여의 기준급여는 재임 시 지급받은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급여는 제1항의 기준급여에 재임기간 1년당 1개월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퇴직급여 지급이후 성과급 지급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2항의 퇴직급여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⑤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9조의2 (지급제한) 임원이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퇴임연도의 성과급 전액
2. 퇴임 직전연도의 성과급 반액
3.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

제4장 보 칙

제10조 (공사규정의 준용) 임원의 연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봉규정과 퇴직급여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지침) <삭제>

부칙 (1999.06.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되 1999년 3월 9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장과 감사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임원의 퇴직급여는 임명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임명일로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급여는 그 당시의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기준급여 및 퇴직급여지급률을 적용하여 일할산정한다.

② 임원의 기본연봉에는 보수규정에 의한 제수당과 복지후생규정 제10조의 급식보조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06.30)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6월 13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1999년도 성과급은 종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2001.03.0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2.28)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27)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4.09)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04)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0)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별표1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2007년도 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 또는 2007년도 직무수행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08.01)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별표6에 규정한 건설사업장에 대한 생활보조수당과 제11조제3항,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임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7조제1항,제10조 중“보수”를“연봉”으로 한다.

⑤ 취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011.03.29)

이 규정은 201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4.24)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1.01)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1.28)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5조 관련)

기 본 연 봉 표

(단위 : 천원)

직 위	기본연봉액
<u><삭 제></u>	<u><삭 제></u>
부사장	86,448
본부장	86,448